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

송신영 연구원
서문희 선임연구위원

프랑스는 한때 유럽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현재 출산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족수당 정책의 2011년도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소득연계형, 그리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0~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만21세 미만까지 일정 조건 충족 시, 특정 상황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프랑스의 2009년 출산율은 1.99명으로 1993년 1.66명까지 떨어진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3년 1.65명으로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8명까지 떨어진 후 증감을 반복하여 2009년 기준 1.15명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에는 공교육 체제,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육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출산율 회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과 보편적 현금 지원으로 구분되고, 현금 지원은 다시 수당과 조세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프랑스는 현금 지원, 조세방식,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을 통틀어 GDP 대비 3.7%로 OECD 국가 중 지원 수준이 가장 높다(그림 1 참조). 특히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그 적용이 관대하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사각지대가 적어 저출산 극복 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본 원고에서는 2011년도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 수당 중 자녀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을 정리하여,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유해미(2010). 육아지원정책의 균형 잡기 -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육아지원정책포럼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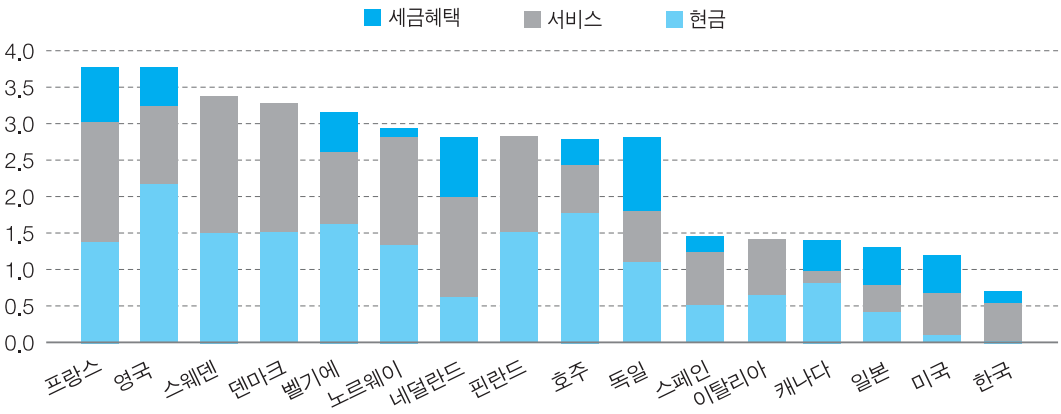

자료 : OECD(2011), Family database

[그림 1] GDP 대비 가족 지원 지출 비율: 2007

2. 프랑스의 가족 수당

프랑스의 가족 수당은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과 일정 소득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소득연계형 수당으로 구분되며, 추가적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여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수당은 종류에 따라 만21세까지 지원되는데, 소득과 함께 기르고 있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자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자녀의 의식주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취약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자세히 보면, 만6세까지는 별다른 조건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만6세부터 16세까지는 자녀가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경우에 지급되고, 만16세부터는 월 소득 836.55유로 이하의 가정에 한한다.

자녀 양육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은 만6세 미만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대상 수당과 자녀를 부양하며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수당이 지급된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 대상 수당

1) 출생 · 입양 특별수당

출생 · 입양 특별수당은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 시 발생하는 초기 지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으로 일정 소득 이하(표 1 참조)의 가정을 대상으로 각각의 출산과 입양에 대해 단 한번 지급된다. 지급액은 임신 기간 7개월 동안 태아 1명당 903.07유로를 지원하고, 입양할 경우에는 1806.14유로를 지급한다. 수급 조건은 임신초기 14주 이내에 임신 사실을 '가족수당금고(Caisse d' Allocations Familiales)'와 '제1차 의료보험

〈 표 1 〉 프랑스의 자녀양육수당 수급조건 소득한도(2009년 연소득)

단위: 유로

해당 자녀 출생(입양) 순위	외벌이	맞벌이
1명	33,765	44,621
2명	40,518	51,374
3명	48,622	59,478
한 명 추가당	8,104	8,104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1). 2011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11).

금고(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에 신고해야 하며, 입양할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2) 기초수당

기초수당은 자녀의 보육 관련 지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기 자녀인 경우 3세 미만 영아에게 지급되며 입양아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36개월간 지급된다. 아동 1인당 월 180.62유로가 지급되며, 출생 · 입양 수당과 마찬가지로 〈표 1〉의 소득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3) 보육방식에 따른 자유선택 보조금

자유선택 보조금은 만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도우미에게 맡길 경우 부모가 지불하는 보육료의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월 소득액이 790.08유로(한부모인 경우 월 395.04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15%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보육도우미 직접 고용 시

– 자격을 갖춘 보육 도우미 고용 시에는 100%, 가정 내 도우미 직접 고용 시에는 만3세 미만 월 419유로, 만3세에서 6세까지는 월 210유로 한도 내에서 보육료의 50%까지 지급한다(표 2, 3 참조).

〈 표 2 〉 프랑스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소득상한

피부양자 자녀	1종	2종	3종
1명	20,079 유로 이하	44,621 유로	44,621 유로 이상
2명	23,118 유로 이하	51,374 유로	51,374 유로 이상
3명	26,765 유로 이하	59,478 유로	59,478 유로 이상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1). 2011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11).

〈 표 3 〉 프랑스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월간 최대 지급액

자녀의 연령	1종	2종	3종
3세 미만	448.25 유로	282.65 유로	169.57 유로
3~6세까지	224.13 유로	141.35 유로	84.79 유로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1). 2011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11).

〈 표 4 〉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월간 최대 지급액

자녀의 연령	소득상한	보육담당 사회복지사의 고용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	가정 내 보육 도우미를 고용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
3세 미만	1종	678.32 유로	819.67 유로
	2종	565.27 유로	706.57 유로
	3종	452.22 유로	593.53 유로
3~6세까지	1종	339.16 유로	409.84 유로
	2종	282.64 유로	353.29 유로
	3종	226.12 유로	296.77 유로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1), 2011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11).

●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 이용 시

– 월 16시간 이상 보육서비스 이용 시 일정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업을 통해 보육도우미를 이용하여 같은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휴일보육 및 야간보육(밤 10시부터 오전 6시)을 받는 경우 10% 인상된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4)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La complemé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은 자녀 출생 및 양육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 두거나 노동시간이 감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3세 미만의 자녀 혹은 20세 미만의 입양아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한명인 경우 출생일 또는 출산휴가, 입양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간 지급되며, 두명 이상인 경우 막내 자녀의 세 번째 생일 전날까지 지급된다.

수당지급액은 직업활동을 완전히 중지한 경우, 월 379.79유로를 받으며,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월 560.40유로를 받는다. 반면 파트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 월 245.51유로를 받고 기초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월 426.12유로를 지원받는다. 근무시간의 50~80%를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달 141.62유로를 지급 받으며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매달 322.24유로를 받는다.

5)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

한편 자녀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최소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La comple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 activite)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선택적 보조금은 '직업활동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전액혜택보다 짧은 기간 동안 수당이 지급되며 둘 중의 하나만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지급액은 기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는 801.39유로이며, 기초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620.78유로이다.

동 수당은 아이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를 입양했을 경우 입양일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될 수 있다. 모성육아, 부성육아, 질병 등에 대한 '일일 수당'을 받는 경우, 이 일일 수당이 끝나는 달부터 아이의 출생이나 입양의 첫 돌 1개월 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부모의 일일 수당

자녀가 병 또는 사고로 아프거나, 장애자인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반드시 돌보아줄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 혹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며, 월급 생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 활동을 중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녀가 받아야 하는 치료가 강제성을 띠거나, 치료를 위해 자녀 곁에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할 경우에 예상 치료 기간을 명시하는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액은 매달 결근 횟수(최대 22일)에 해당하는 일별 수당이 달마다 지급되는데, 액수는 커플에게 일 41.79유로, 혼자인 경우 49.65유로이다. 아이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 몇 가지 조건하에서 월간 106.88유로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총 지급기간은 3년 한도로 최대 310일이다.

다. 장애아 교육수당

장애아 교육수당은 장애아인 자녀의 교육과 치료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만20세 미만의 영구적인 능력 상실 80% 이상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자녀의 상태가 특별 교육이나 가택 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구적인 능력 상실 정도가 50~80% 사이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장애아 교육수당은 월 126.41유로이며 부모 직업활동의 완전 혹은 부분적 중단 여부, 임금이 지급되는 제3자의 고용,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다.

장애인 자녀가 기숙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교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지만, 자녀가 방학이나 주말에 집에 돌아와 있는 날부터 그 일수에 따라 장애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 교육 수당 및 보조금은 각 지자체의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위원회가 최소 1년 그리고 최대 5년간 갱신 가능한 기간을 정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정한다.

라. 가족지원수당

가족지원수당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모두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며, 입양한 경우에는 한부모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적어도 2개월을 계속해서 아이 부양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가족지원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급금액은 한부모 가정에는 피부양자 아이 한 명 당 88.44유로, 입양한 경우에는 아이 한 명 당 117.92유로를 지급한다.

마. 개학수당

개학수당은 6세부터 18세까지 자녀의 학교개학 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1993년 9월 16일부터 2006년 1월 31일에 출생한 6세부터 18세까지의 피부양자 아이가 대상이다. 개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자녀수에 따라 정해진 소득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표 5, 6 참조).

〈 표 5 〉 개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

단위: 유로

피부양자 아이 수	1자녀	2자녀	3자녀	추가 한 명 당
소득 최대액수	22,970	28,271	33,572	5,301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1). 2011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11).

〈 표 6 〉 개학 수당 지급금액

단위: 유로

자녀 연령	6~10세	11~14세	15~18세
지급금액	284.97	300.66	311.11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1). 2011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11).

〈 표 7 〉 2009년 가족보조금 수급조건 소득한도

단위: 유로

자녀의 수	3 명	4 명	자녀 1명 추가 당
커플이 함께 살면서 혼자 직업활동을 할 경우	35,493	41,408	5,915
한부모나 커플이 함께 직업활동을 할 경우	43,419	49,334	5,915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금고(2011). 2011 당신의 수당(Vos prestations 2011).

바.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두 번째 자녀부터 지급되는 수당으로, 만20세 미만의 피부양자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은 가정 내 피부양자 자녀 수에 따라 다르며, 2명인 경우 125.78유로, 3명 286.94유로, 4명 448.10유로이며, 그 이상 시 1명 추가 당 161.17유로 가산된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증액된다. 아이가 부모 각자의 집에 번갈아 거주할 경우 가족수당은 양쪽 부모에게 나누어 지급 될 수 있다.

사. 가족보조금

가족보조금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 만3세 이상 21세 미만의 피부양자인 아이가 최소한 세 명 이상인 가정에 지급하며, 한 명이라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급은 중단된다. 즉 자녀가 세명 이상이더라도 제일 큰 아이가 만21세가 되면 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넷째 아이에 대해 기초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가족보조금 지급은 중단된다. 가족보조금은 매월 163.71유로를 받게 되며 막내 아이의 세 번째 생일부터 지급된다(표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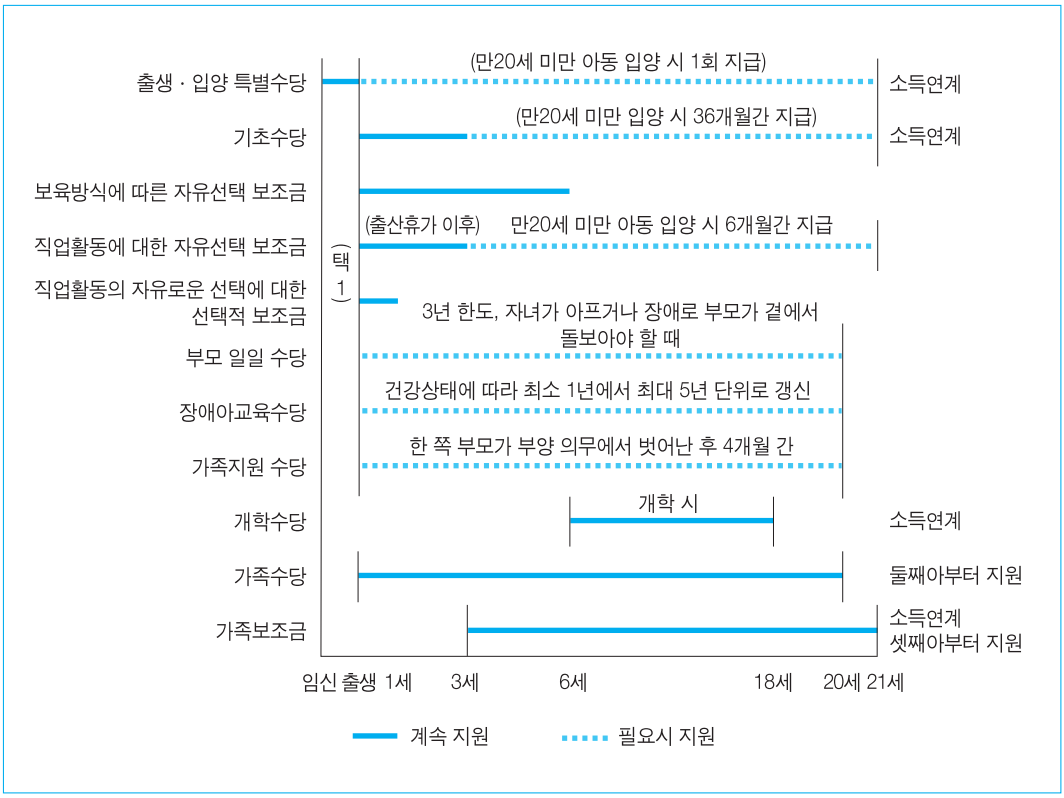

[그림 2] 프랑스의 가족수당

3. 맺는 말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저출산 극복의 주요 비결로 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에 대한 저출산 극복 효과는 대체로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프랑스는 지급대상이 포괄적이고 지원액 수준이 높아 출산율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제도의 성공요인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지원과 소득별 지원, 다자녀에 대한 수당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정책지원의 사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육아지원 수당의 경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수당은 2010년 기준 만24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수당, 입양자녀 양육수당,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수당이 전부이며, 지원액은 입양 장애아동 대상으로 지급되는 보조수당 외에는 월 10만원~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원 금액 설정 또한 조건에 따른 차등적 지원보다는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 내에서는 대체로 획일화되어 있다. 이에 지원 정책의 수혜

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많고,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

둘째, 프랑스 가족 수당은 지원 기간이 영유아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학령기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지원 수당 제도는 장애아나 한부모 가정, 입양자녀와 같은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저소득 가정을 포함한 일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미흡하다. 반면 프랑스는 소득 수준이나 자녀수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일반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개학 수당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수당이나 가족 보조금을 제공하여 학령기에도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해주는 수당 중 부부의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소비가 달라지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시 지원금액에 부모의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원 수준을 책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 선정 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25% 감액하여 인정하여 주기는 하지만, 보육료 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개학 수당과 같이 부모의 소득활동과 관계없는 분야에 대한 비용 지원 시에는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지만, 출생 · 입양 특별수당, 기초수당, 가족보조금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한도를 더 높게 책정하여 생활비 등 소비가 늘어나는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넷째, 프랑스 가족 수당 지급에 관한 업무는 "가족수당금고"라는 전담 기구가 담당하여 수당 지급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불필요한 중복 지급을 방지할 수 있고 대상자도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 편리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수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족 수당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